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86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61호	박성훈의원	2024.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2664호	신정훈의원	2024.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5397호	백승아의원	2024.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7.22)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제13392호	김준혁의원	202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13464호	정성국의원	2025.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14436호	정을호의원	2025.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2.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5980호	진선미의원	202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6900호	서영교의원	2026.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에서 박성훈의원, 신정훈의원, 백승아의원,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원, 정을호의원, 진선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는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6.)에서 심사한 7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

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라.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7조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사정(査定) 등에”를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0조의10)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을 “학교민원을”로 한다.

제34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4장제3절에 제35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

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 ②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제1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의6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책 수립 절차, 시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에 필</u></p>

<신 설>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8(학부모지원센터) ① 제

18조의7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2.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이해 및 소통 지원
3. 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는 사항

③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
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
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
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
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
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 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

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제36조(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학교민원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